

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 2017도15066 뇌물공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 E)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1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심 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죄형균형의 원 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



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31.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